

◆ 백향노인전문요양원 금여이용 정보 ◆

1. 기본 정보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삼정복지재단	이사장	정세운
시설명	백향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순종
시설소재지	전북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696	입소정원	101명
면적	3,813.33㎡	설치일자	2005년 04월 08일

2. 종사자 근무 체계

1)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합계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원	계약의사
65	1	1	4	1	5	2	1	42	5	1	1	1	2

2) 직종별 근무체계

구분	근무형태	
요양보호사	주간(월요일~일요일) 08:30 ~ 18:00	야간(월요일~일요일) 18:00 ~ 09:00
조리원	주간(월요일~일요일) 06:30 ~ 18:00	
기타 직원	주간(월요일~일요일) 08:30 ~ 18:00	

3) 주·야간, 평·휴일 직원인력

구분	시설장	행정팀	의료재활팀	영양위생팀	요양서비스팀	비고
주간	평일	1명	8명	6명	6명	25명
	주말·휴일		1명	1명	3명	25명
야간	평일					9명
	주말·휴일					9명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현행법)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1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또는 월 이용료는 당 해 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결정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액은 일반 20%, 감경대상자 12%, 8%,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급별 비용> (2025년 1월 1일 기준)

등급	급여수가 (1일)	월 급여비용(20%) (30일기준/일반)	월 급여비용(12%) (30일기준/감경대상자)	월 급여비용(8%) (30일기준/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1	90,450원	$90,450원 \times 30일 \times 20\% = 542,700원$	$90,450원 \times 30일 \times 12\% = 325,620원$	$90,450원 \times 30일 \times 8\% = 217,080원$	무료
2	83,910원	$83,910원 \times 30일 \times 20\% = 503,460원$	$83,910원 \times 30일 \times 12\% = 302,080원$	$83,910원 \times 30일 \times 8\% = 201,380원$	무료
3	79,2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20\% = 475,4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12\% = 285,26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8\% = 190,180원$	무료
4	79,2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20\% = 475,4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12\% = 285,26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8\% = 190,180원$	무료
5	79,2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20\% = 475,44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12\% = 285,260원$	$79,240원 \times 30일 \times 8\% = 190,180원$	무료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	월 비급여비용(30일기준)
식재료비(일반식)	1일 3식 (3,000원*3식= 9,000원)	270,000원(간식비 포함)
식재료비(경관식)		
간식비	1일 2회	
이.미용비	월 1회	없음
상급침실	1인실 또는 2인실	없음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 입소자가 원하여 이·미용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 * 약제비, 진료비, 입원비 등 병원진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입소자가 별도 부담한다.
- * 본인부담금은 매월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 우체국 401547-01-001539)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사항>

보험회사명	보험종류	유효기간	증권번호
KB손해보험	노인요양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2023. 07. 21~2038. 07. 21	2023-4268789
KB손해보험	화재보험	2023. 07. 21~2038. 07. 21	2023-4268789

※ 임소자(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요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임소자의 노환으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병사하는 경우
- 임소자가 일상생활 중 자연사할 경우
- 보호자와 외출, 외박하여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임소자가 단독으로 외출하여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요양원 직원이 업무수행 도중 고의성이 없고 인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기타 법규에서 정한 면책범위에 해당 되는 사항

<백향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 및 입소대상

- 1) 입소정원 : 101명
- 2) 입소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급여 이용대상 인정을 받은 어르신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계약 기간은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통상 1년 단위로 한다.
- 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등급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이후 당일 또는 15일 이내 시설에 회신해야 하며 계약만료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 4)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계약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의 변경 시)
- 5)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한다.

3. 계약해제 및 퇴소

- 1) 계약의 해제는 입소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해제와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해제로 본다.
 -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원은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자택복귀, 전원의 경우
 - 전염성 질환으로 시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동생활이 불가능 할 경우
 - 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했을 경우
 - 본인부담금을 상당액 체납하였을 경우(2개월 이상)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시설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폐업, 휴업, 영업정지, 재난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3)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하며, 입소 전 수급자의 상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 * 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정을 준수하며 보호자는 입소자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 * 보호자는 입소자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허락받는다.

4.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동일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 | | | |
|------------|----------------|------------|------------|
| * 입소적응 서비스 | * 식사서비스 | * 상담서비스 | * 건강관리 서비스 |
| * 개인위생 서비스 | * 욕창예방 및 관리서비스 | * 기능훈련서비스 | * 여가서비스 |
| * 치매대응 서비스 | * 투약서비스 | * 임종 케어서비스 | * 응급상황처리 |

2) 비용부담

- * 비용부담 의무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이며 월 급여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본인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독려할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체납 할 경우 요양원에서는 퇴소 및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 서비스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 시설은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적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기호품 등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발생시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 의료체계 구축 >

백향노인전문요양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

건강관리 및 재활훈련
외래진료 서비스 제공, 24시간 돌봄서비스

계약의사 병원 연계병원

- 계약의사 병원 : 이기훈내과 (852-3321)
- 연계병원 : 목천우석노인병원 (843-0119)

1)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의료진료 서비스를 제공

2) 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맞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급여제공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 체계구축

3) 입소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

* 처리절차 : 상황별 응급처치와 동시에 의료팀(간호사, 연계병원 의사)에게 신속히 연락

⇒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119차량 또는 시설차량 이용) ⇒ 사무국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 연락(어르신 상태 및 조치 사항 등 통보)

4) 입소자의 건강 악화 시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원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일 때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 내에서 실시

- 입원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소자의 선택에 의한 시설의 협력병원 또는 입소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외래진료 또는 입원시 간병사항 및 본인부담 진료비는 입소자(보호자)가 납부

* 처리절차 : 외래, 입원진료 ⇒ 보호자 연락 및 선택 ⇒ 진료 결과 설명 ⇒ 진료비납부

8.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점심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문항 바꿈 및 기타 공작을 하는 행위
- 요양원 부지내의 공작을 하는 행위
- 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동거케 하는 행위
- 계약자 이외의 제3자가 급식 및 기타 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 입소자가 제3자에게 침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 시설 내.외의 비품 또는 물건을 망실 또는 처분하는 행위
- 시설내 또는 부지내에서 요양원의 허락없이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시설내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 전기 및 전자제품(다리미, 난로,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시설내에서 칼, 가위, 송곳, 바늘 등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 시설내.외에서 요양원의 허락없이 조리를 하는 행위
- 요양원과 협의없이 음식물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 기타 타 입소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신변 또는 보건상 안전을 해치는 행위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 요양원은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시설과 입소자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면책범위: 요양원은 입소자를 성실히 보호하며 생활하던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소자의 노환으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병사하는 경우	* 입소자가 일상생활중 자연사할 경우
* 보호자와 외출, 외박하여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전제지변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입소자가 단독으로 외출하여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제 3자의 규책사유에 의해 당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 요양원 직원이 업무수행 도중 고의성이 없고 인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10.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과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된 운영규정은 따로 시행일자를 정하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인권의 보호 등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시설규모 및 설비현황

1. 시설의 규모

소유형태	대지	연면적
법인소유	6,080㎡	3,813.28㎡

2. 침실 및 시설규모 현황

-침실현황

구분	침실					특별침실 (1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시설	2실	3실	1실	22실		1실

-실별현황

사무실	원장실	간호 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치료실	작업 치료실	상담실	자원봉사 자실	식당/ 조리실	세탁실	직원 휴게실	문서고	화장실	목욕실
1	1	1	1	1	1	1	1	1	1	5	2	32	2

3. 설비현황

전기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난방 : 심야전기(800KW) 전기 : 일반용 고압(150KW)	경보설비 : 발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 경보설비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탈출구, 방화문, 비상조명, 자동개폐장치	LPG (취사연료)

(원재모임 · 모임관리) 권키영

보통증권(계약자용)
(주)KB국민은행(23.01)(23799)

[illegible][illegible]

大田山崎門前

[illegible][illegible]

백향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60%경감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백향노인전문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성명	이 순 종 (인)	연락처	063)858-1616
	주 소	전북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696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이동전화)
				e-mail)
	주 소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5년 월 3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79,240	79,2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1회)	식재료비 포함				
	이/미용료등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9%,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00분의 12, 100분의 8

◇ 세부내역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1일수가		90,450	83,910	79,240	식비에 간식비 포함
30일 기준	일반(20%)	812,700	773,460	745,440	
	감경(12%)	595,620	572,070	555,260	
	감경(8%)	487,080	471,380	460,170	
31일 기준	일반(20%)	821,700	782,460	754,440	
	감경(12%)	604,620	581,070	564,260	
	감경(8%)	496,080	480,380	469,170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식비 (간식비 포함)		30일기준 : 270,000원 31일기준 : 279,000원			
상급침실료		없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의 해지

1.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 은 ‘갑’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

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갑’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이 순 종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